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5. 12. 23 선고 2025재가소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5. 12. 23 선고 2025재가소3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21 자 2024재나50 결정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4. 9 선고 2022나39643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2재가소11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29 선고 2021가소5752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

담당변호사 신건민, 오인숙, 이은일

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29. 선고 2021가소5752 판결

변론종결 무변론

판결선고 2025. 12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- 청구취지 : 피고(재심피고, 이하 단순히 '피고')는 원고(재심원고, 이하 단순히 '원고')에게 4,446,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재심청구취지* :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5752, 2022재가소11 사건에 관하여 2022. 8. 19.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. 재심피고의 원판결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(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).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,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된다.

따라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기록상 원고는 이 법원 2022. 6. 29. 선고 2021가소5752 판결이 항소심,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이후 별다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는

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

판사 윤상도

* 재심소장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.